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5년 주기로 보호구역 지정 해제 검토〉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25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종욱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12.
3. 회부연월일 : 2026. 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을 포함한 보호구역등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원칙을 두고 있으며, 작전환경 변화 등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작전기지의 운용형태와 주변 도시환경이 크게 변화한 지역의 경우 비행안전상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비행안전구역의 범위 등 보호구역 지정이 장기간 유지되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보호구역등의 지정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조정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보호구역등 지정·변경에 대하여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등을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등의 과도한 지정을 합리화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군사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 · ②(생략) <u><신설></u>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국방부장관은 군사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등을 변경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 -----.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 현행법¹⁾은 작전환경 변화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 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이 해소된 경우에도 보호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보호구역등 지정 및 해제 현황]

(단위: 만㎡)

	2021	2022	2023	2024	2025
지정	256.2	13.6	327.9	22.9	7.3
해제	905.3	-	5,374.5	33,895.0	384.5
완화	369.9	-	97.3	-	1,615.8

* 완화 :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 2→4구역 등

□ 개정안은 5년 주기를 정하여 보호구역의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는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법률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봄.

□ 다만, 개정안에 규정된 ‘군사적·사회적 여건 변화’는 현행법 보호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구역 해제 사유인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와 개념상 유사한 측면이 있고, 현행 체계에 5년 주기라는 기준만 추가된 것이므로 개정의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 국방부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작전환경의 변화, 군사적 필요성 소멸 등 필요시 보호구역에 대한 재검토와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의무적 정기검토 조항을 신설할 실질적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작전상 보호구역을 유지해야하는 필수지역까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09